

## 대학원 학위수여규정

- 제정 2001. 3. 1.
- 1차 개정 2003. 8. 29.
- 2차 개정 2006. 2. 1.
- 3차 개정 2011. 6. 13.
- 일반대학원 및 통합규정 제정 2013. 6. 10.
- 1차 개정 2013. 11. 25.
- 2차 개정 2014. 2. 17.
- 3차 개정 2014. 8. 25.
- 4차 개정 2014. 12. 22.
- 5차 개정 2015. 2. 23.
- 6차 개정 2016. 6. 13.
- 7차 개정 2018. 6. 18.
- 8차 개정 2018. 11. 19.
- 9차 개정 2019. 8. 26.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복지경영대학원 (이하 “본교원” 이라 한다) 학칙 제19조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학위청구자격)** 본교원의 학위청구자격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. 단 복지경영대학원 논문대체학점 신청자의 경우 종합시험 미응시자나 불합격자의 경우에도 졸업이전에 합격함을 전제로 하여 학위청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②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(일반대학원 석,박사 해당) <개정 2014. 2. 17.>
- ③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
- ④ 석사 4학기, 박사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소정학점을(최종학기의 수강학점을 포함) 이수하고, 그 성적평균이 B(3.0) 이상인 자
- ⑤ 연구윤리 관련 특강을 1회 이상 참여한 자(교내외 관련 교육 및 특강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최종논문 결과보고 시 제출) <개정 2013. 11. 25.> 단, 논문대체한 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4. 2. 17.>
- ⑥ 논문제출시한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석사 5년, 박사 10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 단, 군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, 정당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- ⑦ 복지경영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제출 이외에 6학점을 추가 이수함으로써 학위 청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**제3조(종합시험)** ① 종합시험은 년 2회 시행하며, 실시 1개월 전에 공고한다.

- ② 응시자격은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5학점이상 이수한 자, 박사과정(석.박사과정 포함)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. (2012학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) 이 때 응시학점은 연구지도 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을 말한다. 2011년 이전 입학자는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.

- ③ 시험내용은 전공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전공과목 중 석사과정 3과목, 박사과정은 4과목을 실시한다.
- ④ 매 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,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- ⑤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2회에 한하여 과목별로 재응시할 수 있다.
- ⑥ 복지경영대학원의 논문대체 신청자는 추가학점을 이수했더라도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사정에서 제외한다.

**제4조(외국어시험)** ①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.

- ② 외국어시험은 일반대학원 1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로 매 학기 응시할 수 있다.
- ③ 실시 1개월 전에 공고한다.
- ④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일반영어와 전공영어(박사만 해당)을 시험과목으로 한다.
- ⑤ 외국어 시험의 합격기준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외국어 인증시험의 종류와 면제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- ⑥ 외국어 대체강좌를 수강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
- ⑦ 외국인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 <신설 2018. 11. 19.>

**제5조(논문지도교수)** ① 논문지도교수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는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을 제청할 수 있다. 이 때 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책임교수가 되며, 반드시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- ② 전임교수의 한 학기당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지도 학생수는 6명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③ 지도교수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제출기간 2주 전에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논문계획서 제출 및 논문작성)** ① 제3조의 종합시험을 통과 한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2. 17.>

-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은 반드시 “생명윤리심의위원회”의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논문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학위청구논문은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연구윤리준수 서약서에 학생 및 지도교수가 공동으로 서명한다.
- ④ 논문제출시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논문심사위원의 자격)**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교 및 타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

**제8조(심사위원 위촉)** ① 심사위원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석사과정은 3인,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한다. 단, 박사과정의 논문심사위원 선정 시 반드시 교외 전문가 1인 이상 3인 미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4. 12. 22.>

- ② 논문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. 단, 논문지도교수 및 명예교수,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(주심)이 될 수 없다.

**제9조(학위청구논문 심사)** ①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는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2회 이상,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4회 이상(예비심사 포함)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공개 논문발표회를 1회 이상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학위논문의 예비심사는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에 한하여 각 전공주임 또는 심사

위원장의 책임 하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예비심사에 있어서 학위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, 논문주제의 타당성, 취급방법의 타당성, 연구 성과 등을 심사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.

⑤ 박사학위청구자의 논문 등재 실적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, 반드시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학위청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<개정 2016. 6. 13.>

⑥ 학위논문의 평가는 심사위원별로 “가“ 또는 “부“로 판정하며, 통과 여부는 석사학위심사위원 2/3이상의 찬성, 박사학위 심사위원 4/5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.

**제10조(재심사)** 학위청구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수정·보완하여 1개 학기 이상 경과 후 석사는 1회, 박사는 2회에 한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심사위원 심사료)**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
**제12조(논문 최종제출)** 석사와 박사는 4부의 완성된 학위논문을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본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학위수여)** ①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학위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재적위원 2/3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의 여부를 결정하고 수여대상자의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석사·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 논문의 부정행위 등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<개정 2015. 2. 23.>

**부 칙 <2001. 3. 1.>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03. 8. 29.>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06. 2. 1.>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11. 6. 13.>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13. 6. 10.>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6월10일부터 시행하며,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 <2013. 11. 25.>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 2. 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 8. 2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 12. 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 2. 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 6. 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 6. 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 11. 1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 8. 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학술지 등재 내용 및 기준

<개정 2016. 6. 13., 2018. 6. 18.>

구분	학술지 등재 내용 및 기준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5 학년도 이전 입학생	현재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9조 학위청구논문심사 5항 ; “박사학위청구 논문은 등재(후보지)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실적이 있어야 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 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6 학년도 이후 입학생 ~	- 박사학위청구 논문은 표1(전체학과)과 표2(예능계열학과)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<b>200%이상(필수조건: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에서 반드시 70% 이상 포함)을 충족</b> 하여야만 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 <b>입학 후 부터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하며, 반드시 저자의 소속이 “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000(홍길동) “으로 기록된 논문에 대해서만 인정한다.</b> - 증빙자료로 논문실적물(학술지 별쇄본), 또는 Portfolio 제출 표1(전체학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구분</th> <th colspan="3">1편당 인정률(%)</th> <th rowspan="3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국내</th> <th>국제</th> <th>교내</th> </tr> <tr> <th>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</th> <th>SCI / SSCI / A&amp;HCI / SCI(E) / SCOPUS</th> <th>대학(원) 논문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단독</td> <td>130%</td> <td>200%</td> <td>10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공동 연구</td> <td>2인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7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인</td> <td>70%</td> <td>70%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인 이상</td> <td>50%</td> <td>50%</td> <td>30%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1편당 인정률(%)			비고	국내	국제	교내	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	SCI / SSCI / A&HCI / SCI(E) / SCOPUS	대학(원) 논문집	단독	130%	200%	100%		공동 연구	2인	100%	100%	70%		3인	70%	70%	50%		4인 이상	50%	50%	30%																
	구분		1편당 인정률(%)	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국내	국제	교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	SCI / SSCI / A&HCI / SCI(E) / SCOPUS	대학(원) 논문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단독	130%	200%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공동 연구	2인	100%	100%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3인	70%	70%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4인 이상	50%	50%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표2(예능계열학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분</th> <th>세부사항</th> <th>인정률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개인전 (단독)</td> <td>국제 개인전</td> <td>해외 갤러리 또는 전시 가능한 문화기관, 교육기관 내의 갤러리에서 1인전으로 발표한 경우</td> <td>200%</td> </tr> <tr> <td>국내 개인전</td> <td>화랑협회에 등록된 국내 갤러리, 미술관, 박물관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업 갤러리에서 전시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2인전</td> <td>화랑협회에 등록된 국내 갤러리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업 갤러리에서 2인이 전시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국제 단체전</td> <td>국제 미술단체 협회전</td> <td>국제 미술단체 회원의 자격으로 정기협회전에 출품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>국제 학술 대회 출품</td> <td>국제 미술 학술행사에 출품</td> <td>150%</td> </tr> <tr> <td>국제비엔날레 출품</td> <td>국제 예술 비엔날레 또는 트리엔날레에 출품</td> <td>20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6">국내 단체전</td> <td>해외 갤러리</td> <td>해외 화랑의 초대로 단체가 전시하는 경우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>전국규모 협회전</td> <td>사단법인 또는 사설 협회의 회원으로 정기협회전에 출품한 경우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국제규모 아트페어 / 국제화랑제</td> <td>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 아트페어 또는 국제규모 화랑전에 출품한 경우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>국내 아트페어</td> <td>국내에서 개최하는 아트페어 또는 화랑제에 출품한 경우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화랑초대전</td> <td>국내 화랑 또는 갤러리에서 단체전에 참여한 경우</td> <td>50%</td> </tr> <tr> <td>지역협회전</td> <td>지역협회 회원 자격으로 작품을 전시한 경우</td> <td>30%</td> </tr> <tr> <td>동문전</td> <td>동문 자격으로 전시에 출품한 경우</td> <td>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	세부사항	인정률(%)	개인전 (단독)	국제 개인전	해외 갤러리 또는 전시 가능한 문화기관, 교육기관 내의 갤러리에서 1인전으로 발표한 경우	200%	국내 개인전	화랑협회에 등록된 국내 갤러리, 미술관, 박물관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업 갤러리에서 전시	100%	2인전		화랑협회에 등록된 국내 갤러리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업 갤러리에서 2인이 전시	70%	국제 단체전	국제 미술단체 협회전	국제 미술단체 회원의 자격으로 정기협회전에 출품	100%	국제 학술 대회 출품	국제 미술 학술행사에 출품	150%	국제비엔날레 출품	국제 예술 비엔날레 또는 트리엔날레에 출품	200%	국내 단체전	해외 갤러리	해외 화랑의 초대로 단체가 전시하는 경우	100%	전국규모 협회전	사단법인 또는 사설 협회의 회원으로 정기협회전에 출품한 경우	70%	국제규모 아트페어 / 국제화랑제	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 아트페어 또는 국제규모 화랑전에 출품한 경우	100%	국내 아트페어	국내에서 개최하는 아트페어 또는 화랑제에 출품한 경우	70%	화랑초대전	국내 화랑 또는 갤러리에서 단체전에 참여한 경우	50%	지역협회전	지역협회 회원 자격으로 작품을 전시한 경우	30%	동문전	동문 자격으로 전시에 출품한 경우	30%	
구분		세부사항	인정률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인전 (단독)	국제 개인전	해외 갤러리 또는 전시 가능한 문화기관, 교육기관 내의 갤러리에서 1인전으로 발표한 경우	2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국내 개인전	화랑협회에 등록된 국내 갤러리, 미술관, 박물관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업 갤러리에서 전시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인전		화랑협회에 등록된 국내 갤러리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업 갤러리에서 2인이 전시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제 단체전	국제 미술단체 협회전	국제 미술단체 회원의 자격으로 정기협회전에 출품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국제 학술 대회 출품	국제 미술 학술행사에 출품	1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국제비엔날레 출품	국제 예술 비엔날레 또는 트리엔날레에 출품	2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내 단체전	해외 갤러리	해외 화랑의 초대로 단체가 전시하는 경우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전국규모 협회전	사단법인 또는 사설 협회의 회원으로 정기협회전에 출품한 경우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국제규모 아트페어 / 국제화랑제	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 아트페어 또는 국제규모 화랑전에 출품한 경우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국내 아트페어	국내에서 개최하는 아트페어 또는 화랑제에 출품한 경우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화랑초대전	국내 화랑 또는 갤러리에서 단체전에 참여한 경우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역협회전	지역협회 회원 자격으로 작품을 전시한 경우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문전	동문 자격으로 전시에 출품한 경우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학칙/규정에 정한 학술지 논문게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최종 학위수여(졸업)가 불가함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